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84
----------	-----

2016년 3월 8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11일
  3. 상정일자 : 2016년 3월 8일
-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16년 3월 8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

1. 개정이유

- 검정고시 수험생과 일반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명칭을 일원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제명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안 제명)

### 나. 조례 용어 정비

-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안 제1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984호로 제출되어 2016년 2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의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가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한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그동안 동법 시행령에서는 학력 및 자격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학력인정 시험(이하 “검정고시”)의 명칭을 학력과정별로 각각 상이하게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해온 바 있습니다.<sup>1)</sup>
-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6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변경되면서 초·중·고등학교 모두 졸업을 기준으로 한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과 같이 제명과 제1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입법원칙 중 하나인 체계정당성의 원칙과 법적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동 조례의 경우 동법 시행령이 지난 2015년 1월 6일에 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다소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할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가 적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 검정고시제도 학력인정단계 및 내용**

단계별	검정고시명		인증내용
	종전	개정	
초등학교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초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초등학교졸업학력 ·중학교입학자격
중학교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 ·고등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 ·대학교입학자격

1)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입학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각각 달리 규정하였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10호, 2013.10.30., 일부개정])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제1항제1호 참고.

**[표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

종전	현행
[대통령령 제24810호, 2013.10.30,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961호, 2015.1.6, 일부개정]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b>중학교입학자격</b>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b>초등학교졸업학력</b>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 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 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b>고등학교입학자격</b>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 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 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b>중학교졸업학력</b>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를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를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u>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 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u> ”	제명 “ <u>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u>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시행하는 <u>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u> 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시행하는 <u>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u> 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